

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

-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용모·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.
-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성장·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도전, 창조, 협력의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부산항만공사 사장

1. 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

가. 모집 분야

구 분	인원	수행 예정 업무
체험형 청년인턴 (10명)	일반	부산항만공사 사무·기술 업무지원
	장애인	
	고졸	

나. 지원자격

구 분	지원 자격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공, 학점, 어학, 성별 및 자격 제한 없음○ 임용예정일(2020.12.01.)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* 1985년 12월 02일 이후 출생자○ 임용일로부터 4개월('20.12.01.~ '21.03.31.) 근무가능한 자○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상 채용결격사유 및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<p>※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자는 지원 불가</p>

장애인	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상의 장애인
고졸	○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'20년도 졸업자 또는 '21년 2월 졸업예정자 ○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합격일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('19.10.15.~' 20.10.14.)인 자 ※ 상기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자는 지원 불가

* 해당 자격 보유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

**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(전문대 이상 재학자 및 휴학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는 등)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

2. 가점사항

구분	주요내용	전형별 가점	
		필기 전형	면접 전형
취업지원대상자	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총점의 5~10%	총점의 5~10%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총점의 5%	총점의 5%

* 상기 가점이 중복될 경우, 최고 가점사항만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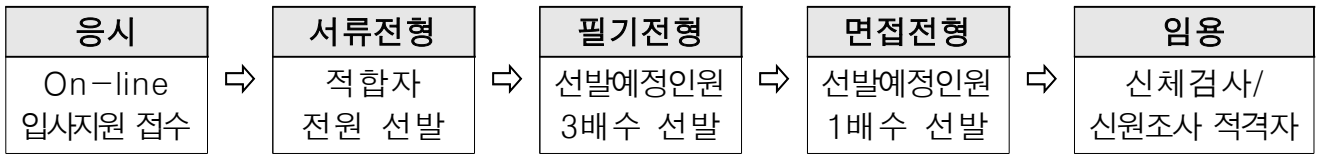
**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을 상한제에 따라 청년인턴(일반) 모집 분야만 적용

3. 근로조건

구분	주요내용
근무기간	4개월('20.12.01.~ '21.03.31.)
고용형태	비정규직(인턴)
근무지역	부산 소재 본사
보수	194만원 상당 (일반직 7급 가급 기준, 4대보험가입, 중식비 포함)
근무시간	주 5일, 1일 8시간 근무

4. 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

□ 전형절차



*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

□ 전형일정

구분	전형 일정	비고
채용 공고	'20.09.29.(화)~10.14.(수)	· 공사 · 채용 홈페이지 등
입사지원서 접수	'20.10.08.(목), 09:00 ~ '20.10.14.(수), 18:00	· 채용 홈페이지 접수
서류전형	'20.10.19.(월)	· 적합/ 부적합 여부 판단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0.10.21.(수)	·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선발
필기전형	'20.10.24.(토)	· 직업기초능력평가, 인성검사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	'20.10.28.(수)	· 3배수 이내 선발
면접 전형	'20.11.03.(화)	· 역량면접
최종 합격자 발표	'20.11.09.(월)	· 1배수 이내 선발 (예비합격자 포함)

*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

□ 서류전형

- (지원방법)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busanpa.incruit.com>)로 입사지원서 제출
- (전형기준)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) 적합/부적합 여부 판단
 -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
 -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, 동일문자 연속 반복, 회사명 오기 등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배사항(이름, 나이, 성별, 출생/출신지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친인척 직업사항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기재)의 경우 불합격 처리

[예시]

- 성별 : 형, 누나, 언니, 오빠, 여학생회, 여군, 군계급(이병~병장 등) 등
- 출생/출신지 :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며, 경상도 사나이 등
- 가족관계 :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, 성실하신 어머니 등
- 친인척 직업사항 : 선장이신 할아버지, 물류사업을 하시는 삼촌 등

○ (합격배수)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

□ 필기전형

- (대상) 모집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
- (장소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(합격배수)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 인원수의 3배수
- (전형기준)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,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
- (시험과목)

시험과목 (반영비율)	주요 내용	문항 (시간)
인성검사 (적/부)	○ 적합/부적합 판정 기준 (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) - 총점 70점 이상, 신뢰도 70% 이상	250문항 (30분)
직업기초 능력평가 (100%)	○ (영역) 의사소통능력(10), 자원관리능력(10), 수리능력(10), 조직이해능력(10), 문제해결능력(10)	50문항 (60분)

□ 면접전형

- (응시대상) 모집 분야별 필기전형 합격자
- (역량면접) 실무능력 및 인성 평가를 위한 면접 실시
- (평가기준)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(5개 항목 평가)

평가항목	배점	평점기준 점수
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	20점	평점요소별 20~8점 부여 - 상 : 20~15점 - 중 : 14~9점 - 하 : 8점
전문지식과 응용 능력	20점	
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	20점	
예의, 품행 및 성실성	20점	
창의력,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	20점	
합 계 (100점)		100 ~ 40점

*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자 및 위원 3분의 과반수가 각 평점항목 중 어느 하나를 “하(8점)”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

○ (합격배수)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

□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

구분	서류전형	필기전형	면접전형
합격자 결정	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판단하여 적합자 전원 합격 처리	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(해당자에 한함)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*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* 탈락기준 : 평가점수 6할 미만	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(해당자에 한함)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, 과반수 위원이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최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* 탈락기준 : 위원별 평점 평균 6할 미만
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	○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우리공사 『인사규정 시행세칙』 제14조에 따라 결정 * 1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. 2.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.		
예비 합격자 운영	○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,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, 예비합격자 지위는 공고일로부터 1주일간 유효 *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		

*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 (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성적은 면접시험에 반영되지 않음)

5. 제출서류 (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,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)

구분	세부 사항
공통	○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 전의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하나) 사본 1부 * 지원 자격 상 연령(만 34세 미만) 확인용으로, 생년월일 이외 자료는 음영 처리 ○ 우대사항(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 * 해당자에 한하며 채용공고일('20.09.29.) 이후 발급분만 인정
고졸	○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* 채용공고일('20.09.29.) 이후 발급분만 인정

6. 기타사항

가.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 또는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『형법』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6의5.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
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.
9.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.
10.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가담한 자
11.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나. 기타 결격사유

1. 공무원 또는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『형법』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『형법』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다.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

1.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2.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 되는

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3. 우리공사 「채용업무 처리지침」 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
제29조 (채용비위 피해자 구제) ① 채용비위에 관한 내·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.

1.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
가. 서류전형 :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
나. 필기전형 :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
다. 면접전형 :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 2.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
가. 서류전형 :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시험 재실시
나. 필기전형 :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
다. 면접전형 :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 재실시
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만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4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.
5.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에 따릅니다.
6.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(작성)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7.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.
8.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,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9.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, 채용전형

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 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(불합격)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0.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11.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12.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름, 나이, 성별, 출생/출신지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친인척 직업사항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,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예시]

- 성별 : 형, 누나, 언니, 오빠, 여학생회, 여군, 군계급(이병~병장 등) 등
- 출생/출신지 :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며, 경상도 사나이 등
- 가족관계 :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, 성실하신 어머니 등
- 친인척 직업사항 : 선장이신 할아버지, 물류사업을 하시는 삼촌 등

13.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14.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15.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 공사의 조화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16.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합동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17.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(2020.10.14.(수), 18:00)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(051-999-3254, 3023)로 문의 또는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busanpa.incruit.com>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

□ 우리 공사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○ (시험장 출입금지 안내)

환자, 의사환자*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

*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○ (사전 고시사항)

- ① (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)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배제
- ② (출입금지)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
- ③ (유증상자)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
- ④ (응시자 및 감독관)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,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, 시험장 내부 이용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
-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단 증상 모니터링 필요함

붙임 1.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각 1부. 끝.